

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

※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앞쪽)

1. 신청인

법 인 명		사업자등록번호	
대표자성명		업 태 · 종 목	
소재지			

2. 환급신청 명세

①결손사업연도	년 월 일 ~ 년 월 일	②직전사업연도	년 월 일 ~ 년 월 일
③결손사업연도	⑥결손금액		
결손금액	⑦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		
④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계산	⑧과세표준		
	⑨세율		
	⑩산출세액		
	⑪공제감면세액		
	⑫차감세액(⑩-⑪)		
⑤환급신청세액 계산	⑬직전사업연도법인세액(⑬=⑩)		
	⑭차감할 세액[(⑧-⑦) × 세율] [⑭ ≥ (⑩-⑫)]		
	⑮환급신청세액(⑬-⑭) (⑮ ≤ ⑫)		

국세환급금계좌신고	⑯예입처	은행 (본)지점
	⑰예금종류	
	⑱계좌번호	예금

「법인세법」 제7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제2항에 따라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법인)

(인)

신청인(대표자)

(서명)

세무서장 귀하

작성 방법

1. ⑥결손금액란 : 「법인세법」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을 적습니다.
2. ⑦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란 : ⑥란의 결손금액중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을 적되, ⑧란의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3. ⑧과세표준 및 ⑪공제감면세액란 : 환급신청일 현재 확정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.
4. ⑨·⑭란의 세율은 직전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말합니다.
5. ⑩산출세액란 : ⑧란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.
6. ⑬직전사업연도법인세액란 : ⑪란의 공제감면세액을 빼기 전의 금액(⑩산출세액란의 금액)을 옮겨 적습니다.
7. ⑭차감할 세액란
 - 가. ⑧란의 과세표준에서 ⑦란의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(원미만 금액은 절사)을 적습니다.
 - 나. ⑪란의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⑦란의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을 조정하여 ⑪란의 공제감면세액과 같거나 큰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.
8. ⑮란의 환급신청세액은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으로서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